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요 업무분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제조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